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87
----------	-------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정점식 · 강대식 · 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훈 · 김석기
김선교 · 김성원 · 김소희
김승수 · 김예지 · 김용태
김위상 · 김은혜 · 김장겸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김태규 · 김태호 · 김형동
김희정 · 나경원 · 박대출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배현진 · 백종현 · 서명옥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서천호 · 성일종 · 송석준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안상훈 · 안철수 · 엄태영

우재준 · 유상범 · 유명하
유용원 · 유의동 · 윤상현
윤영석 · 윤용근 · 윤재옥
윤한홍 · 이달희 · 이만희
이상휘 · 이성권 · 이소희
이양수 · 이인선 · 이종배
이종욱 · 이진숙 · 이철규
이현승 · 임이자 · 임종득
장동혁 · 정동만 · 정성국
정연욱 · 정희용 · 조경태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주호영 · 진종오 · 최보운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한기호 · 한지아 의원
(1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및 직접 수사범위 축소,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원칙적 보완 수사요구 제도 도입과 2022년 시행된 소위 ‘검수완박법’에 따른 검사 직접 수사범위 축소 확대 및 보완수사 범위 축소 등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해 온 것은 물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였고, 사법정의 실현에 장애물로 작용해 왔음.

특히,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불송치 결정권)은 법률전문가에 의한 사법통제의 사각지대를 발생케 하여 부실한 수사, 신뢰할 수 없는 수사, 범죄를 암장하는 수사라는 오명을 만들어 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구제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일반 국민이 경찰 판단의 허점을 찾아내고 증거를 확보해 제출해야 하는 지경까지 생겨나게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사법정의 실현에 대한 의지나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음.

그동안 이러한 부작용과 폐단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져 왔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 노력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께 그대로 전가되어 왔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노력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충분한 공론화와 면밀한 제도 설계도 없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까지 급박하게 도입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서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려는 주장까지 제기됨으로써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부작용과 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는 본래 검찰이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 권력자들에 의해

정치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고, 재판관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임.

이에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중대범죄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송부 범죄,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사법경찰관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관련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되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포함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송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보완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고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배제 요구권을 부여토록 하면서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이나 시정조치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직무배제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기한을 90일 이내로 한정하되 이의신청권을 고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진정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의2 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5조의2(중대범죄등에 대한 협력 의무)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하 “중대범죄등”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 경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혐의 유무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중대범죄등에 대해 송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 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⑤ 검사는 중대범죄등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보완수사를 포함한다)한다.

1. 사법경찰관(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송치받은 범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범죄
2.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3. 제1호 및 제2호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

제1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법경찰관에게”를 “사법경찰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송치사건의”를 “송치사건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건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는”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가 지

정한 기한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를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징계 요구를 받은 관서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7조의3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을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으로, “징계를”을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수사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요구를 받은 관서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45조의5 제6항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관계 서류를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 중 “제245조의5제2호의”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로 한다.
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제1항 중 “제245조의5제2호의”를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5제1항 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수사 요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이 경우 징계 요구를 받은 관서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45조의9의 제목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공소청 직원은 「공소청법」 제55조제1항제1호의 사무 수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직무는 그 범위 내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명을 받은 공소청 직원 중 7급까지의 공소청 직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까지의 공소청 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보조하는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255조 및 제26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2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2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취소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55조, 제264조의2, 제328조제1항제1호 및 제3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95조의2(중대범죄등에 대한 협력 의무)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하 “중대범죄등”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u> <u>② 사법경찰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요지, 개시 경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사법경찰관이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혐의 유무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u> <u>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중대범죄 등에 대해 송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한다.</u> <u>1. 범인에 관한 사항</u> <u>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u>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u>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u>	<u>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u> <u>4. 양형 자료에 관한 사항</u> <u>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u> <u>⑤ 검사는 중대범죄등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u>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보완수사를 포함한다)한다.</u> <u>1. 사법경찰관(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송치받은 범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범죄</u> <u>2.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u>
--	---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197조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생략)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3. 제1호 및 제2호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

<삭 제>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
 -----사법경찰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

1. 송치사건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건의-----.
2. (현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는 -----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

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
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
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
계령」에 따른다.

<후단 신설>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 ⑥ (생략)

<신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

-----.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

-----.

이 경우 징계 요구를 받은 관서
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
회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
다.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
은 검사는 수사의 공정성, 효율
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⑧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

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후단 신설>

⑧ (생략)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생략)

<신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

-----.
이 경우 징계 요구를 받은 관서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

<신 설>

<신 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
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수사 요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이 경우 징계 요구를 받은 관서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신 설>

징계위원회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45조의9(공소청 직원)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공소청 직원은 「공소청법」 제55조제1항제1호의 사무 수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직무는 그 범위 내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지명을 받은 공소청 직원 중 7급까지의 공소청 직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까지의 공소청 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

④ (생략) 第255條(公訴의 取消) ① 公訴는 第1審判決의 宣告 前까지 取消할 수 있다. ② 公訴取消는 理由를 記載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但, 公判廷에서는 口述로써 할 수 있다.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第328條(公訴棄却의 決定) ① 다음 境遇에는 決定으로 公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1. 公訴가 取消 되었을 때 2. ~ 4. (생략) ② (생략) 第329條(公訴取消와 再起訴) 公訴取消에 依한 公訴棄却의 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公訴取消後 그 犯罪事實에 對한 다른 重要한 證據를 發見한 境遇에 限하여 다시 公訴를 提起할 수 있다.	<u>행하는 자를 보조하는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第328條(公訴棄却의 決定) ① -- ----- -----. <u><삭 제></u>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	---